

호외



2025. 11. 5.(수)

시보는 공문으로서 효력을 갖는다.

발행자 : 군 산 시 장

발행처 : 공보협력과 (☎454-2083)

【입법예고】

군산시 공고 제2025-2284호 군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

1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군산시 공고 제2025-2284호

「군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을 제정함에 있어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5년 11월 5일



군 산 시 장

**군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입법예고**

1. 제정목적

- 『군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』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시행규칙 제정의 목적(안 제1조)
- 배차 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(안 제2조 ~ 제3조)
- 공용차량 이용자의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공용차량 이용자의 실비 부담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다. 공용차량 이용 신청, 지원 검토 및 결정에 관한 규정 (안 제4조 ~ 제5조)
- 라. 이용자 등의 의무에 관한 규정 (안 제6조)
- 마. 지원내용 공개에 관한 규정 (안 제7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·법인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(회계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 제출사항

- 1)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)
- 2) 성명(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나. 의견 제출할 곳

- 우) 54078 군산시 시청로 17(조촌동, 군산시청) 회계과
(전화: 063-454-2379, FAX: 063-452-8161)

다. 의견 제출방법: 서면, 전화, 팩스, 전자우편, 직접방문 등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회계과 계약계(063-454-2379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군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(안) 1부.
2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. 끝.

군산시 조례 제2025-2284호

군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(안)

군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.

군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군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배차 승인 통보) 차량관리부서는 배차 승인을 결정한 경우 그 승인사항과 공용차량 이용에 따른 의무사항 등을 업무 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3조(배차 승인 취소)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용차량 배차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.

- 1. 해당 공용차량이 보수·수리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
- 2. 해당 공용차량을 재난·재해복구 작업, 긴급구호 활동 등에 동원하여야 하는 경우
- 3. 탑승 인원이 변경되어 「군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제4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

② 차량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라 배차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즉시 업무 담당 부서에 배차 승인 취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
제4조(보험 가입) ① 공용차량 이용자는 탑승자 전원에 대한 보험 가입증권을 탑승일 전날까지 차량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차량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증권을 제출하지 않은 이용자에

대하여는 배차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.

제5조(이용자 실비 부담) 공용차량 이용 시 유류비, 차량수리비를 제외한
추가비용은 이용자가 실비 부담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조례명 : 「군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조례안 내용	찬성여부		의 견	비 고
	찬 성	반 대		